

|       |        |
|-------|--------|
| 제정 일자 | 2022.7 |
| 개정 일자 | 2025.1 |
| 개정 차수 | 3      |

# 협력회사 행동규범

## (Supplier Code of Conduct)

2025. 01

1.개 요

2.인 권 경 영

3.안 전 · 보 건

4.환 경

5.윤 리

6.경 영 관 리

# 1) 개요

## 1.1. 행동규범 목적

HD한국조선해양은 협력회사들과 함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회사들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1.2. 행동규범 기준

본 규범은 UN 세계인권선언,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핵심 협약 등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규범과 법률 간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장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 1.3. 행동규범 대상 및 기대 사항

모든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2~3차 협력회사들에게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하여야 합니다.

## 1.4. 추가 사항

HD한국조선해양 또는 HD한국조선해양이 지정한 외부 감사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은 필요시 서면 또는 현장점검/실사를 진행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지도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의 조성을 위해 본 규범을 포함한 HD한국조선해양의 공급망 관리방안 및 이행 의무사항은 HD한국조선해양의 통합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통합구매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s://hipro.hd.com>

## 2) 인권경영

HD한국조선해양은 UN(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및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을 비롯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하며, 인권과 노동 관련 국제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존중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방지·완화하고 기업활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인권존중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 2.1.고용상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1) 협력회사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 채용 및 고용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 군인, 연금 자격, 유전정보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4) 협력회사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협력회사는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거나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임신 및 기타 질병 검사 등)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 2.2.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해야하며, 노사 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고 관리(정기적 소통, 이행

결과에 대한 문서나 사진 보관)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2.3.미성년 근로자 보호

- 1) 협력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노동을 허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15세 미만,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의미)
- 2) 협력회사는 채용 과정 중에 근로자의 연령 확인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협력회사의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이 발견되면 HD한국조선해양과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협력회사가 18세 미만 근로자(미성년 근로자) 대상 근로병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비롯하여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를 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 2.4.학생 근로자 보호

- 1)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를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고용하고 보호·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를 파견한 학교가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고용된 학생 근로자의 교육 파트너를 법령에 근거해 엄격히 실시하고 충분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학생 근로자가 근로기간동안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2.5.자발적 취업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주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이주근로자가 본국을 출국하기 전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채용 국가로 입국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서의 교체나 수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업무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합리적인 통지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협력회사는 비자발적 노동<sup>1)</sup>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sup>2)</sup> 등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및 수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sup>1</sup>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또는 비 윤리적인 계약에 묶인 노동 등이 있음.

<sup>2</sup> 노예제 및 인신 매매 등이 있음.

- 5) 협력회사는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기숙사, 숙소 등)의 출입과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6) 협력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신상과 고용과 관련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sup>3)</sup>을 보관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 2.6.근로시간 관리

- 1) 협력회사는 현지 법령에 근거하여 최장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초과근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1 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 2.7.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1)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법령에 근거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해진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

3 여권,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또는 이민 관련 문서 등이 있음.

사유없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에 따른 공제나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여 정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5)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쾌적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6)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 7) 협력회사는 임신 근로자에게 법령이 요구하는 휴가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8. 인도적 대우

- 1)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인도적 대우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9.지역주민의 인권보호

협력회사는 자원 채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안전 보건의 권리, 거주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환경적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영향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소음 발생, 일조권 침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2.10. 고객 인권 보호

협력회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과정은 물론 사용단계에서의 안전과 효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정보 보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2.11. 취약계층 보호

협력회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내 조치를 마련하고, 사회공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3) 안전·보건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조치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해야합니다.

####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1)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실행 및 운영, 모니터링 개선의 과정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sup>4)</sup>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근로자로부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급·용역·위탁의 형태의 종사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3.2. 비상상황 대응

- 1) 협력회사는 모든 잠재적 비상상황(자연재해, 집단감염, 안전사고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연락망,

---

<sup>4</sup>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 방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경영 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보건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45001, 한국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비상대응 조직, 비상사태 시나리오, 대응계획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탈출로, 유도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3.3.산업재해 및 질병**

- 1) 협력회사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에 대비한 규정과 세칙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단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보조설비 도입, 작업대 높낮이 조정 등), 순환 근무, 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중대재해 또는 중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작업을 중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 3.4. 안전진단

- 1)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인 유해 인자와 근로자의 노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안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안전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잠재적인 유해인자 제거 또는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해를 제어하기 위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3.5.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정기 안전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방독/방진 마스크 등) 및 작업복을 무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6. 보건관리

- 1) 협력회사는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상 장애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청결한 휴게공간, 화장실, 위생적인 식당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 또는 제 3자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비롯한 주거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 ㄱ) 주거 시설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 ㄴ) 적절한 출입통제장치를 제공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비상구와 소방장치 설치
  - ㄷ) 근무 외 활동에 적합한 조명 비치
  - ㄹ) 냉난방 및 환기시설 제공
  - ㅁ) 안전한 개별 보관함을 비롯해 충분한 개인공간 제공
  - ㅂ) 남녀구분
- 3)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환경 변경, 직무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3.7.안전보건 소통

- 1) 협력회사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 모든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을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계획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 및 상관으로부터 보복 등 근로조건 상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4) 환경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수준을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4.1. 환경경영시스템<sup>5</sup> 구축

- 1) 협력회사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HD한국조선해양과의 계약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협력회사는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원료 및 공정 변경과 설비 관리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발생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4.2. 자원의 효율적 사용

- 1) 협력회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원자재 및 용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

<sup>5</sup>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을 공표함. 내부 시스템 정비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해 ISO 14001 인증 취득을 고려할 수 있음.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사업 수행 시 자원 사용을 축소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4.3.대기오염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 현황을 상시 점검 및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4.4.수자원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폐수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폐수가 공공수역 등으로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폐수는 위탁처리, 자체처리 등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5) 협력회사는 우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유출물이 우수 관거, 공공 상수도 등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4.5.화학물질 관리

- 1) 협력회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과 유해성을 평가 후 선정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반, 저장, 보관, 사용 등)할 때는 관리 대장을 기록·보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위험 표시나 정보(MSDS, 경고 표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자에게 화학물질의 사용·보관·폐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4.6.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1)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사용 절감, 공정의 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자체적인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4.7.폐기물 관리

- 1) 협력회사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발생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으로 적절히 분류하고 폐기물의 성상에 알맞은 방법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보관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실사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 4.8.소음·진동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와 주민 등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며, 주기적으로 해당 설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 4.9.토양오염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장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토양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를 수행하여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4.10. 산림파괴 예방 및 토지 보존**

- 1) 협력회사는 산림파괴 예방 및 토지의 보존을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산림조성, 토지 보존, 녹지화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4.11. 생물다양성**

- 1) 협력회사는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및 확대를 위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이행 가능한 조치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감소·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검토할 때에도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4.12. 녹색구매

- 1) 협력회사는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물품' 구매를 확대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녹색구매'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녹색구매'란 천연자원의 보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 물품 구매를 확대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구매 행위를 의미하며, '친환경 물품'이란 대외적으로 녹색구매 품목으로 인정되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아래의 방침을 준수하여 녹색구매를 수행해야 합니다.
  - ㄱ) 친환경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는 물품 계약 시 공급하는 제품이 친환경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환경관련 인증마크 또는 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ㄴ) 물품 계약 후 해당 물품의 주요 환경정보 변경 시에는 HD한국조선해양에 고지해야 합니다.
  - ㄷ) 공급 물품의 제조 등 제반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ㄹ) 그 밖에 HD한국조선해양이 요구하는 녹색구매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요 친환경 인증]

| 구분      | 인증마크                                                                                | 내용                                                           |
|---------|-------------------------------------------------------------------------------------|--------------------------------------------------------------|
| 환경표지 인증 |  | 제조·소비·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이 적고, 자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에 부여 |

|                       |                                                                                    |                                                                  |
|-----------------------|------------------------------------------------------------------------------------|------------------------------------------------------------------|
| 저탄소<br>인증제품           |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저탄소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부여                               |
| 우수재활용<br>제품(GR)<br>인증 |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br>-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 친화적 제품     |
| 녹색<br>인증              |   |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그린 IT, 친환경 농식품 등 친환경 녹색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사업체 및 전문기업에 부여 |
| 에너지절약<br>인증           |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부여<br>-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절전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 고효율<br>기자재<br>인증      |  |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설비 및 기기                                             |

## 5) 윤리경영

협력회사는 협력업체간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 관계의 구축을 위해 현지 법을 준수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으로 윤리경영 방침<sup>6</sup>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협력회사는 경영진과 근로자의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윤리 및 공정거래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sup>6</sup>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SO 37001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공표함. 내부 시스템 정비 및 고객 신뢰확보를 위해 ISO 37001 인증 취득을 고려할 수 있음.

## 5.1. 거래관계의 투명성 확보

- 1) 협력회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이득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위법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이해관계 충돌을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선물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4) 협력회사는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은公款으로써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허위 증빙을 통해 공금을 전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5) 협력회사는 브로커, 컨설턴트 등 제3자를 선임한 경우, 뇌물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회사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협력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 부적절한 제안, 뇌물 또는 부당/부적절한 이익을 제공 또는 수락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 5.2.바람직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1)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공정거래 및 반독점,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담합행위에 대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거래와 입찰제재와 손해배상액의 면제 및 경감을 다루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담합을 포함한 협력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상담은 담합신고센터 (<https://hiproscm.hhi.co.kr/HomePage/Collusion/apply>)로 연락바랍니다.
- 4) 협력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실천사항<sup>7</sup>이 협력업체간 거래관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 ㄱ)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우월한 교섭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
  - ㄴ) 협력업체의 공정한 등록(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 협력회사 등록 및 운영 절차 공개하여 거래의 공정성 제고
  - ㄷ)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위반행위 예방
  - ㄹ)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 서면 발급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면 발급 문화 확산

<sup>7</sup> HD한국조선해양 공정거래가이드 실천 사항은 홈페이지(<https://hipro.hd.com>)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5.3. 위조부품 방지

- 1) 협력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생산, 가공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협력회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생산 또는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또는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5.4. 정보 공개 및 보호

- 1) 협력회사는 노무·안전보건·환경, 경영현황,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기록의 위조나 부실 표기 또는 허위 공개/진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협력회사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 등을 목적물 제조 등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전 허가와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4) 협력회사는 이해관계자들(임직원 및 고객사 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할 때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5.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 1) 협력회사는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창구와 내·외부 신고자 보호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절차를 상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 5.6.수출입 관리 및 통관

- 1) 협력회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및 관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전쟁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수출입 제한 규제 등을 준수하며 위 법률 위반 및 경제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 2) 협력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현황파악 활동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6) 경영관리

협력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본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명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배포 및 게시되어야 합니다.

### 6.1.자율적/독립적 의사결정 및 개선

- 1) 협력회사는 정관과 사규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최소 분기 1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모든 사업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강탈 및 횡령에 대해 청렴성을 유지하고, 인권존중 경영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영향평가, 처벌, 개선 및 이행절차 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6.2. 이해관계자 소통

- 1) 협력회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근로자, 관리자, 공급업체, 고객, 경영진 등) 정기적인 소통 절차를 보유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ESG이슈(법령 또는 규정 및 고객의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리스크 등)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보유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본 행동 규범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 및 기록하고 주요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6.3.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1) 협력회사는 분쟁 위험지역에서 공급되는 광물(텅스텐, 주석, 금, 탄탈륨 및 코발트)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계약에서 요구하지 않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 협력회사는 수출 제한 및 경제 제재에 있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협력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환경/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 5) 협력회사는 2~3차 협력회사에게 본 규범과 동등한 책임과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여야 합니다.

## 6.4.리스크 관리

- 1)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 3) 협력회사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사업에 미칠 영향의 수준에 따라 위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 파악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6.5.근로자의 참여 및 고충 처리

- 1) 협력회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 및 효과적인 고충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규범에서 다루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접수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2) 협력회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제보 될 경우, 내용 확인과 조사 절차를 거쳐 구제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 등의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 3) 협력회사는 근로자들이 고충과 피드백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6.6.평가 및 시정 조치

- 1) 협력회사는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환경, 사회 책임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2) 내·외부 평가와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6.7.문서화 및 기록

- 1)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밀 유지, 국가와 사회,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 2)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하며, HD한국 조선해양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하도급법 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에 따른 원가, 매출, 경영전략, 영업관련 정보 제외)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본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규범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규범은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HD한국조선해양 홈페이지 또는 하이프로 시스템(<https://hipro.hd.com>)을 통해 공지됩니다.

HD한국조선해양의 모든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 규범이 명시하는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반영해야 하며 HD한국조선해양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조치 및 노력을 수행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협력회사명”

대표이사 : ○ ○ ○ 전자서명